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한 보육교사 교권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실무 및 학계 전문가 비교

최 양 미* · 박 미 경** · 이 흥 재***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은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전문성이 공공성 및 근로성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문성’ 영역에서는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영유아 평가권 강화,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성’ 영역에서는 신분보유권 및 보수청구권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근로성’ 영역의 경우, 교원단체 결성권, 교원단체 교섭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영역별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 부분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주제어(Key Words): 교권(Teacher's Rights)

보육교사(Early Childhood Teacher)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 안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공동저자

***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교신저자(hongjaelee@daum.net)

I. 서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인해 영유아 보육은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로 인식되고 있다(OECD, 2006). 우리나라도 저출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영유아 보육은 개인차원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보육 예산의 확대 편성, 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양성 등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전(1990년) 어린이집은 1,919개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 42,517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한 48,000명(1990년)에서 1,452,813명(2015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a).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정책 역시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왔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우수성은 보육시설 등 인프라와 보육프로그램, 그리고 보육교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인적 요인인 보육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경화, 박재학, 2016; 송순옥, 김하중, 성연정, 2015). 보육시설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우수할지라도 실제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주체는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한다(김기철, 신애선, 2016; 서은희, 이미숙, 2002; 염지숙 외, 2014; 이경민, 박주연, 2015; 이경진, 이유진, 2017). 역으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 예를 들어 아동학대 등은 영유아의 안정적 애착형성은 물론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안나래, 김희수, 안선희, 2015; 표갑수, 황영자, 2011). 이처럼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은 물론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주, 2015; 임영미, 정희정, 2016).

그렇다면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많은 연구에서 교사의 성공적인 직무수행과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전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의 성실한 수행과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손홍숙, 2015; 위미숙, 2005; 임승렬, 2007).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는 가르치는 활동과 관련된 권리인 교육권, 직무권한 및 법적 권한을 포함한 신분보장 및 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정래, 2014).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도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권리에 관한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권에 관한 이상의 개념과 법규정을 토대로 할 때, 교권은 교직의 특성을 기준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는 전문성,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인 공공성, 노동의 권리인 근로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양다경, 이연승, 2012; 임승렬, 2007). 보육교사의 권리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김보영, 2011). 전

문성 영역의 교권은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교육행위에 대한 수업권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을 뜻한다(김정래, 2014). 김보영(2011)은 교육할 권리를 보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보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영유아지도권, 영유아평가권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양다경, 이연승(2012)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교육내용 결정권 및 방법 결정권, 유아지도권, 유아평가권 등을 교육할 권리의 세부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때, 전문성 영역의 교육할 권리의 세부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 영유아 지도방법과 평가방법 결정권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공공성 영역의 교권은 교사의 신분상 권리와 재산상 권리를 포함한다. 신분상 권리는 교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분보장 등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며, 재산상 권리는 교사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권리를 의미한다. 임승렬(2007)과 김보영(2011)은 신분보유권, 교권단체결성, 교섭권, 사회적 우대권, 쟁소제기권, 보수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공무상재해보상권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양다경, 이연승(2012)은 이들의 내용 중 공무상재해보상권을 제외하고 연금청구권을 추가하여 논의하였다. 이처럼 공공성 영역의 권리는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분상 권리는 신분보유권, 소송제기권, 사회적 우대권, 재산상 권리는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및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근로성 영역의 교권은 근로자로서의 교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권은 단체결성권, 교섭권, 행동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쟁의행위인 단체행동권에 관해서는 그 인정범위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교육이 지니는 공공성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에서는 근로기본권 중 단결권 및 교섭권만을 교사의 근로권으로 제시하고 있다(신은수, 유홍옥, 안부금, 안경숙, 김은정, 유영의, 김소향, 2013, 황보영란, 2011).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보육교사의 근로권을 단체결성권 및 교섭권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보육교사의 권리 보장은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지원과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많은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권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거나 침해받을 경우 교사의 직무만족과 사기는 저하되고 이직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교육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김길숙, 문무경, 이민경, 2015; 김보영, 2011; 임승렬, 2007).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교권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교사의 권리 침해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김길숙 외, 2015; 김보영, 2011).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미흡하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육교사는 상기 법률이 아닌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김길숙 외, 2015).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서도 유치원교사의 경우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분류되어 있지

만 보육교사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분류되어 있다(통계청, 2007). 이처럼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구은미, 정혜영, 2016; 김광병, 김기화, 2015) 교원으로서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에 관한 별도의 법조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육교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육교사의 교권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교사의 권리, 즉 교권에 관한 논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연승, 2014; 손희권, 2007; 양다경, 이연승, 2012; 위미숙, 2005). 영유아 교사의 교권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 역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구은미, 정혜영, 2015; 김치영, 임상도, 2014; 양다경, 이연승, 2016; 임승렬, 2007; 홍다희, 2016; 황보영란, 2011, 2012). 최근 들어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나 권익보호(김광병, 김기화, 2015; 김길숙 외, 2015) 등에 대한 실태연구나 보육교사 권리에 관한 개념(구은미·정혜영, 2016)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권 실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진단’에 관한 논의에서 ‘처방’을 위한 논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어떠한 영역의 권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보육교사의 권리 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등의 연구문제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보육교사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 기법의 하나이다(Saaty, 1980). 특히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의 균형적 접근을 위해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적 검토와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비교분석을 통해 보육교사의 교권에 관한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균형감 있는 교권 확립 방안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교권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논의함으로써 학술적으로는 보육교사의 교권 관련 연구범위 확대 및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들의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 및 그 하위 요인 우선순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의 균형있는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AHP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규모보다는 대상의 적합성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을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등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설문대상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집단은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이거나 보육교사 관련 연구 및 평가 경험이 있는 교수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실무 전문가 집단의 경우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교직원 상담 등 지역사회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5b, p. 369).

표본의 크기는 전문가 트랙별로 25명씩, 총 50명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와 우편 및 직접 방문에 의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에 시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총 45부(실무 전문가: 24부, 전문가: 2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무응답 문항이 있는 설문지 3부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1이상인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총 38부(실무 전문가: 20부, 학계 전문가: 18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집단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실무자가 52.6%(20명)로 학계 전문가 47.4%(18명)보다 다소 많고, 전체 응답자 모두 여성(38명, 100%)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55.3%(21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28.9%(11명), 60대 이상이 7.9%(3명), 30대가 5.3%(2명)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개칭한 기관이다. AHP 조사 시점인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총 86개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6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구 분	항 목	빈 도	비 율
성 별	여성	38	100.0%
연 령	30대	2	5.3%
	40대	11	28.9%
	50대	21	55.3%
	60대 이상	3	7.9%
	무응답	1	2.6%
유 형	실무 전문가	20	52.6%
	학계 전문가	18	47.4%
합 계		38	100.0%

2. 연구도구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개선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은 계층구조를 구성하였다.

표 2.

연구도구

1수준: 목표	2수준: 영역	3수준: 항목	선행연구
영유아 보육교사 교권 확립	전문성	교육과정 편성권	김보영(2011), 김길숙 외(2015), 양다경, 이연승(2012)
		교육과정 운영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영유아 지도권	
		영유아 평가권	
	공공성	신분보유권	김보영(2011), 양다경, 이연승(2012), 임승렬(2007)
		쟁소제기권	
		사회적 우대권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 청구권	
근로성	교원단체 결성권	황보영란(2011)	
	교원단체 교섭권		

표 2에서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각각의 전략들은 앞에서 살펴본 교권 관련 논의를 토대로 도출되었다. 보육교사 교권 확립에 관한 계층구조는 3개의 수준(층)으로 구성된다. 제1수준은 목표로 영유아 보육교사 교권 확립으로 설정하고, 제2수준은 교권 영역 요인으로 전문성, 공공성, 근로성 등 총 3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제3수준은 보육교사 교권 영역별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전문성은 보육교사의 교육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김길숙 외(2015), 김보영(2011), 양다경, 이연승(2012)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권 개선, 교육과정 운영권 개선,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 영유아 지도권 강화, 영유아 평가권 강화 등 6개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둘째, 공공성은 보육교사의 신분권 및 재산권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김보영(2011), 양다경, 이연승(2012), 임승렬(2007)이 제시한 신분보유권 강화, 쟁소제기권 향상, 사회적 우대권 강화, 보수청구권 강화, 연금청구권 강화, 실비변상 청구권(직무수행 소요경비 청구권) 강화 등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셋째, 근로성은 보육교사의 근로권과 관련되며, 황보영란(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 등 2개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AHP 조사에 활용된 각각의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9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즉, 1에서 9까지의 수와 이의 역수들로 각 문항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AHP를 활용하여 보육교사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 기법의 하나이다(Saaty, 1980). AHP는 복잡한 문제를 계층으로 구조화하고 계층요소들의 중요도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한다(고길곤·하혜영, 2008). AHP의 구체적인 과정은 첫째, 의사결정 구조의 계층화 단계이다.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1수준(목표)-제2수준(영역)-제3수준(하위 영역) 등 3개의 서로 다른 수준으로 계층 구조화한다. 둘째, 비교에 의한 판단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2가지의 판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① 목표에 관련한 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을 위한 판단과정, ② 각 평가요인들에 있어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위한 판단과정이며, 각 판단과정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한 쌍대비교를 수행한다(Saaty, 1986).

수집된 자료는 Expert Choice 11.5를 통해 분석되었다. 최종 유효표본의 평가치는 AIJ(Aggregate Individual Judgement) 모형을 적용하였다. AIJ모형은 개인별로 얻어지는 모든 쌍대비교행렬의 결과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 그룹 전체의 쌍대비교 행렬을 구하는 방식이다. AIJ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집단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AHP 기법에서 각 개인의 의사를 종합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역수성 공리를 유지하는 모형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또한 기하평균은 복수평가자의 평가치를 통합할 때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조성훈, 김태성, 이영찬, 1998; Aczél, & Saaty, 1983).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 및 그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2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다. 1단계는 AHP 응답내용의 논리적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일관성 검증은 회수된 개별 설문지 응답내용의 일관성 비율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개별 쌍대비교 결과를 기하평균으로 통합한 전체 자료의 일관성 비율을 최종 검토하였다.

2단계 분석은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 및 그 하위요인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으로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종합분석과 전문가 집단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학계 및 실무 전문가별 보육교사 교권 확립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의한다.

Ⅲ. 연구결과

1. 일관성 검증

보육교사 교권 확립을 위한 영역별·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에 앞서 자료의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HP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의 논리적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관성 비율을 활용하였다. 일관성 비율이 작을수록 의사결정 판단의 일관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이 0.1보다 작을 경우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관성 검증은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1단계는 회수된 개별 설문지 응답내용의 일관성 비율을 조사하여 0.1이상인 설문지 4부를 제외하였다. 2단계는 개별 쌍대비교 결과를 기하평균으로 통합한 전체 자료의 일관성 비율을 검토하여 최종 검증하였다.

제2수준인 영유아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간 일관성 비율은 0.09(학계 전문가: 0.09, 실무 전문가: 0.09)로 나타나 Saaty(1980)가 제안한 일관성 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수준인 영유아 보육교사 교권 영역별 일관성 검증에서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의 일관성 비율은 0.02(학계 전문가: 0.03, 실무 전문가: 0.02), 공공성의 CR은 0.02(학계 전문가: 0.02, 실무 전문가: 0.03), 근로성의 일관성 비율은 0.00(학계 전문가: 0.00, 실무 전문가: 0.00)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 일관성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유아 보육교사 교권 영역별 및 하위 요인에 관한 응답내용의 일관성은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교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영유아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문가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전문성(0.656)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성(0.228), 근로성(0.116) 순이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교권 영역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문성의 가중치(0.656)는 공공성보다 약 2.8배, 근로성보다 약 5.6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교사들의 교권 확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공성이나 근로성 영역보다 전문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 모두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문가 집단별 영유아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간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간의 견해는 전문성-공공성-근로성의 순으로 동일하다. 다만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전문가의 경우 전문성(0.603)이 공공성(0.244)의 2.4배, 근로성(0.153)의 3.9배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학계 전문가는 전문성(0.708)이 공공성(0.208)의 3.4배, 근로성(0.084)의 8.4배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실무 전문가보다는 학계 전문가들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보육교사 교권 영역 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구 분	전 체		실무 전문가		학계 전문가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① 전문성	0.656	1	0.603	1	0.708	1
② 공공성	0.228	2	0.244	2	0.208	2
③ 근로성	0.116	3	0.153	3	0.084	3
일관성 비율(CR)	0.09		0.09		0.09	

3. 교권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보육교사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전문성 영역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구 분	전 체		실무 전문가		학계 전문가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① 교육과정 편성권 개선	0.088	6	0.115	6	0.067	6
② 교육과정 운영권 개선	0.109	5	0.134	5	0.086	5
③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	0.146	4	0.181	3	0.113	4
④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	0.204	2	0.189	2	0.213	2
⑤ 영유아 지도권 강화	0.280	1	0.227	1	0.335	1
⑥ 영유아 평가권 강화	0.172	3	0.154	4	0.186	3
일관성 비율(CR)	0.02		0.02		0.03	

첫째, 전문가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영역의 하위 요인에 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지도권 강화(0.280)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0.204), 영유아 평가권 강화(0.172),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0.146), 교육과정 운영권 개선(0.109), 교육과정 편성권 개선(0.0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나 교육내용 결정권 보다는 영유아 지도권과 교육방법의 결정권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두 집단 모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내용 결정권이 낮은 우선순위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보육 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 등의 보급으로 인해 보육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량의 범위가 실제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 집단에 따른 전문성 영역 하위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교육과정 편성권 및 운영권 개선이 각각 6위와 5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과 영유아 평가권 강화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무 전문가의 경우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3순위)이 영유아 평가권 강화(4순위)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지만, 학계 전문가는 영유아 평가권 강화(3순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계 전문가들의 경우 보육교사의 전문성 개선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해 두 집단 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상대적 중요도의 차이이다. 실무 전문가 집단의 경우 전문성 영역의 6개 하위 요인간 상대적 가중치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학계 전문가의 경우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하위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 간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보육교사의 신분권 및 재산권을 포함하는 ‘공공성’ 영역의 하위 요인에 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공공성 영역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구 분	전 체		실무 전문가		학계 전문가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① 신분보유권 강화	0.248	1	0.177	3	0.345	1
② 쟁소제기권 강화	0.069	6	0.064	6	0.075	6
③ 사회적 우대권 강화	0.170	4	0.201	2	0.135	4
④ 보수청구권 강화	0.232	2	0.255	1	0.200	2
⑤ 연금청구권 강화	0.174	3	0.176	4	0.164	3
⑥ 실비변상 청구권 강화	0.105	5	0.127	5	0.081	5
일관성 비율(CR)	0.02		0.03		0.02	

공공성 영역의 하위 요인 중 신분보유권 강화(0.248)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보수청구권 강화(0.232), 연금청구권(0.174), 사회적 우대권(0.170) 등이 실비변상 청구권 강화(0.105)나 쟁소제기권 강화(0.069)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신분보유권 및 보수청구권 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신분권과 관련해서는 쟁소제기권과 사회적 우대권 강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보수청구권과 연금청구권에 비해 실비변상청구권 강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문가들은 공공성 영역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신분과 급여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성 영역의 하위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전문성 영역과는 달리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하위요인 간 우선순위를 비교해보면, 쟁소제기권과 실비변상청구권 강화는 두 집단 모두에서 최하위 순위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결과이다. 이들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경우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무 전문가의 경우 보수청구권 강화(0.255), 사회적 우대권 강화(0.201), 신분보유권 강화(0.177), 연금청구권 강화(0.176)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있지만, 학계 전문가는 신분보유권 강화(0.345), 보수청구권 강화(0.200), 연금청구권 강화(0.164), 사회적 우대권 강화(0.135) 등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집단은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공공성 영역에서 사회적 우대권 및 신분보유권 등의 신분권 보다는 보수청구권과 같은 현실적 차원의 재산권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수준 상향조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한 구은미·정혜영(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학계 전문가는 보육교사의 신분보유권 강화라는 신분권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 방안으로 실무 전문가들이 경제적 보수의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학계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신분보유권을 교권 확립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 간에는 보육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교사’ 신분을 보유하는 것이 교권 확립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른 요인들에 비해 신분보유권의 상대적 가중치(0.345)가 확연히 높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달리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상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로서의 교사’로 분류되어 있다(통계청, 2007).** 국제표준직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서도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전문가→교육전문가)와 달리 대분류에서는 ‘서비스 종사자’, 중분류에서는 교육전문가가 아닌 ‘개인돌봄 종사자’(personal care workers), 소분류에서는 ‘보육종사자’(child care workers)로 분류되어 있다(International Labor Office, 2012).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신은수, 안부금, 이선명(2014)은 표준직업분류상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와 구별되고 매우 낮은 직업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직능수준에서도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모두를 동일한 전문직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학계 전문가의 분석결과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보육교사의 직능수준 향

**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6)에 따르면 유치원교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대분류)→‘교육전문가 및 관련직’(중분류)→‘유치원교사’(소분류)→‘유치원교사’(세분류)에 속한다. 이와 달리 보육교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대분류)→‘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중분류)→‘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소분류)→‘보육교사’(세분류)에 속함으로써 유치원교사와는 다른 직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통계청, 2007)

상과 함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 신분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적 우대권 강화에 대한 집단 간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차이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실무 전문가는 사회적 우대권 강화(0.201)를 2순위로 평가한데 비해 학계 전문가는 4순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학계 전문가에 비해 실무 전문가들의 경우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실무 전문가들의 견해는 보육교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직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권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근로권을 의미하는 ‘근로성’ 영역의 하위 요인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 6.

근로성 영역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구 분	전 체		실무 전문가		학계 전문가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①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	0.506	1	0.527	1	0.482	2
②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	0.494	2	0.473	2	0.518	1

근로성 영역의 하위 요인 중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교원단체 교섭권은 2순위로 평가되었다. 두 요인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비교해 보면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과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의 상대적 가중치는 각각 0.506 vs. 0.494로 나타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문가 집단은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근로성 영역의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 결성권과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유사한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근로성 영역 하위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성 하위요인 간 우선순위를 비교해보면, 실무 전문가는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0.527)이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0.473) 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학계 전문가는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달리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아직까지 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단체도 결성되어 있지 않다. 실무 전문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근로성 영역에서 교원단체 결성권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

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학계 전문가는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0.518)이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0.482)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계 전문가들의 경우 보육교사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인 교원단체 교섭권의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영유아를 보호하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의 권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길숙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교권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보육교사의 교권 영역은 교육권을 의미하는 전문성, 보육교사의 신분권과 재산권을 포함하는 공공성, 근로권을 의미하는 근로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영역별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교권 영역 및 하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의 균형있는 시각과 견해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AHP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전문가 대상 AHP 주요 결과 및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전문성(1순위)→ 공공성(2순위)→ 근로성(3순위)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무 및 학계 전문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육교사 교권 확립을 위해 전문성 영역의 교육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임승렬, 2007). 또한 교사의 직무권한 성립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한 김정래(2014)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실무 전문가에 비해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교권 영역 간의 가중치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계 전문가들의 경우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이 최근 들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상 특이점은 실무 전문가들도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최우선적 요인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 보육 실무자들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보수 등 공공성 영역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강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구은미, 정혜영, 2016). 이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일차적으로 보육교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노력과 함께 교사 양성체계 및 보수교육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개선은 보육교사 자격체계에서 최하등급

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김광병, 김기화(2015)가 주장한 바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과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교육복지 전문가 양성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기존 보육교사들의 경우 직무 및 보수교육 과정에서 교직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성’ 영역의 하위 요인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영유아 지도권 강화(1순위)→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2순위)→ 영유아 평가권 강화(3순위)→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4순위)→ 교육과정 운영권 개선(5순위)→ 교육과정 편성권 개선(6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영유아 지도권 강화(1순위)와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2순위), 교육과정 운영권(5순위) 및 편성권(6순위) 개선 등의 우선순위 평가결과는 동일하다. 다만 실무 전문가의 경우 교육내용 결정권 개선(3순위)이 영유아 평가권 강화(4순위) 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반면, 학계 전문가는 영유아 평가권 강화(3순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집단간 선호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무 전문가 집단보다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전문성 영역의 6개 하위 요인 간 상대적 가중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차별적인 결과이다. 특히 두 집단 모두 전문성 영역의 영유아 지도권 강화와 교육방법 결정권 개선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보육교사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지만 영유아 지도 및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실제 보육 현장에서 활동 중심으로 일과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보육교사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 유수경, 이연선, 손유진(2007)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문성 영역의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일정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영유아를 지도하고 상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영유아 지도 및 교육방법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학습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성’ 영역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신분보유권 강화(1순위)→ 보수청구권 강화(2순위)→ 연금청구권(3순위)→ 사회적 우대권(4순위)→ 실비변상 청구권 강화(5순위)→ 쟁소제기권 강화(6순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신분보유권과 보수청구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수수준의 미흡이라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직업안정성을 강조한 백혜리(2009)와 교사의 고용안정성을 강조한 김은영 외(2013)의 주장과 동일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공공성 영역이 권리 보장을 위한 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전문가 집단 간에 상당한 시각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무 전문가들의 경우 보수청구권과 사회적 우대권을 신분보유권 보다 강조하는 반면 학계 전문가는 신분보유권을 보수청구권이나 연금청구권, 사회적 우대권보다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성 영역에서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처방에 대해 두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는 규범상 교원으로서 보수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지만 보육교사는 인건비 등을 보조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김광병, 김기화, 2015). 보육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신분을 획득하게 될 경우 직업안정성 개선은 물론 보수 등 경제적 처우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도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성 영역에서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이들이 교육전문가로서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신분과 관련해 보육교사의 직능수준과 전문성, 유치원교사와의 관계와 유보통합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근로성’ 영역의 하위요인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결과,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1순위)→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2순위)로 나타났다. 실무 전문가는 교원단체 결성권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학계 전문가는 교원단체 교섭권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전문가 집단 간 선호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제도상 보육교사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와 달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섭 및 협의는 물론 교권침해시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원단체도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성 영역에서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전문성 및 공공성 영역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교권 확립 방안 수립과정에서 현장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간의 상호 토론과 협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AHP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무 및 학계 전문가 간에는 보육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영역 및 그 하위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있어 상당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교권 영역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전문성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교권 영역별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육교사의 교권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합리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장 실무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고르게 참여시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교권에 대한 실무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상호 존중되고, 이들 간의 협의를 지원하는 협의체 등의 체계가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 등 다른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보육교사의 교권을 중심으로 교권 영역과 그 하위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경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보육교사 교권 논의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후속연구들에 의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AHP 기법의 경우 상대적 가중치의 합은 1이고, 상대적 가중치에 따라 우선순위가 설정된다. 따라서 각 요인들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서는 비교대상 요인이 동일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교권과 관련된 영역별 하위 요인의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공공성 영역의 경우 각각 6개의 하위 요인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하지만 근로성 영역의 경우에는 내용의 특성상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교권 영역의 하위 요인 간 종합가중치(global weight)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권 영역별 상위 우선순위로 선정된 하위 요인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길곤, 하혜영(2008).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17(1), 287-329.
- 구은미, 정혜영(2015).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의 권리 개념 연구. 아동과 권리, 19(3), 343-366.
- 구은미, 정혜영(2016).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사권리에 대한 개념도 분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96, 1-27.
- 김경화, 박재학(2016).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경로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6(2), 1-16.
- 김광병, 김기화(201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비교 분석. 교육문화연구, 21(5), 203-227.
- 김기철, 신애선(2016). 영아교사의 전문성, 민감성, 행복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관계 및 영향력. 한국보육학회지, 16(2), 57-82.
- 김길숙, 문무경, 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보영(2011).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2), 7-24.
- 김언순(2014). 기본권으로서 교권에 대한 논의: 교권보호의 출발점. 한국교육사학, 36(1), 79-114.
-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2013).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래(2014). 권리와 권위의 차원에서 본 교권의 의미. 교육철학, 52, 1-27.
- 김치영, 임상도(2014). 유아교사의 권위 상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권위 정당화 방안 탐색. 유아교육, 23(4), 25-44.
- 백혜리(2009). 예비보육교사의 직업에 대한 기대와 포부에 대한 연구. 보육정책연구, 5(2), 103-117.
- 보건복지부(2015a).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5b). 2015 보육사업안내.
- 서은희, 이미숙(2002).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 조직헌신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3), 155-170.
- 손홍숙(2015).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5(2), 65-84.
- 손희권(2007).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교육행정학연구, 25(4), 47-72.

- 송순옥, 김하중, 성연정(2015).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보육학회지, 15(3), 89-107.
- 신은수, 안부금, 이선명(2014). 표준직업분류(ISCO, KSCO)에 의한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직업 비교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8(5), 127-152.
- 신은수, 유홍옥, 안부금, 안경숙, 김은정, 유영의, 김소향(2013). 유아교사론. 서울: 학지사.
- 안내래, 김희수, 안선희(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교직선택동기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5), 87-102.
- 양다경, 이연승(2012). 교권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어린이미디어연구, 11(1), 25-51.
- 양다경, 이연승(2016).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755-776.
- 염지숙, 이명순, 조형숙, 김현주(2014). 유아교사론. 경기: 정민사.
- 위미숙(2005).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1), 127-151.
- 유수경, 이연선, 손유진(2007). 이야기 나누는 시간동안 교사-유아의 담화에 나타난 교사의 수업유지 전략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249-272.
- 이경진, 이유진(2017). 보육교사의 반응성 상호작용 전략 적용을 통한 영아의 중심축 행동 발달. 한국보육학회지, 17(1), 1-28.
- 이경민, 박주연(2015). 유아교사의 행복, 소진, 이직의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5(6), 33-48.
- 이현주(2015). 보육교사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5(4), 93-112.
- 임승렬(2007).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유치원 교원의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 12(3), 1-18.
- 임영미, 정희정(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정서노동, 정서표현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77-105.
- 조근태, 조용근, 강현수(200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개정. 대전: 통계청.
- 표갑수, 황영재(2011). 중소도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설장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6, 1-23.
- 홍다희(2016). 유치원 교사의 권리에 대한 기대수준과 보장수준 간의 집단별 차이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보영란(2011). 유치원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1(5), 87-112.
- 황보영란(2012). 유치원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 연구. 유아교육연구, 32(5), 375-393.
- Aczél, J., & T. L. Saaty.(1983). Procedures for synthesizing ratio judgement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27(1), 93-10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aaty, T. L.(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s allocation*. New York: McGraw.

_____.(1986). Axiomatic found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32(7), 841-855.

투고일자 2017.04.30 / 수정일자 2017.06.21 / 게재확정일자 2017.06.24

Abstract

Priority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s Rights: Comparing the Practical and the Academic Experts Using the AHP

Choi, Yang Mi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yang University)

Park, Mi Kyung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Lee, Hong Ja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s rights using hierarchical analysis process(AHP) and sugges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 conducted the survey of the practitioners and academics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balanced discussion on the area of early childhood teacher' s rights and sub-factors. The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the professional authority is the most important rights of establishing the early childhood teacher' s rights.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the rights to guide young children and to decide on a teaching method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in professional authorities. Thir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ight to have an their identity and the right of claim for remuner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s in the Publicness. In the labor factor, the experts emphasize that the right to make union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ight of teachers' union for bargaining. These confirm the difference of the perceptions of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n the areas of early childhood teacher' s rights and sub-factors between the practitioners and academic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arly childhood teacher' s rights.